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총청북도 도세 감면안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집중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0년 10월 5일
- 회부일자: 2020년 10월 6일

3. 제안이유

- 집중호우로 건축물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2020년 7~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고자 함.

5. 검토의견

- 법적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7~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관련법령 별첨

○ 종합의견

- 2020년 7~8월 집중호우로 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피해가 컸음.

*충주, 제천, 옥천(군서·군북면), 영동, 진천(진천읍·백곡면), 괴산(청천면), 음성, 단양

〈 사유시설 피해현황 〉

- ▶ 건 물 : 895동 47억원(유실·전파 56동, 반파 78동, 침수 761동)
- ▶ 농경지 : 전(밭) 1,268ha 254억원
- ※ 총 피해규모 : 이재민 1,810명 / 공공시설 포함 2,500억원 / 피해복구비 6,985억

-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은 집중호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세부담을 경감시켜 다소나마 위로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 규모가 컸던 만큼 지역자원시설세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감면액 : (추계) 445건 9,653천원

- 붙임 1. 집중호우 피해 주민 총청북도 도세 감면안 1부
- 2. 관련법령 1부

【붙임1】 집중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집중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세목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2. 감면대상 : 유실, 전파, 반파, 침수 건축물(주택 포함)
※ 피해구분 기준은 2020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의함
3. 감 면 율 : 전액감면(100%)
4. 감 면 액 : (추계) 445건 9,653천원
- 주택 385건 4,604천원 / 건축물 60건 5,049천원
5. 감면적용 : '20년도 7, 9월분에 소급 적용 (기 납부자 환급 예정)
6. 감면방법 :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

【붙임2】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2.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3.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5.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6.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7.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